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-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2회 정기회

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('96. 12. 26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송 완 호)

가. 제안이유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· 심의회장 조정

- 현행 심의회장인 "도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함

· 회장 조정으로 발생한 당연직위원 1인은 "보건환경국장"을 위촉함

- 당연직위원(현재) : 행정부지사, 기획관리실장, 공업경제국장, 건설교통국장

- 당연직위원(조정) : 기획관리실장, 보건환경국장, 공업경제국장, 건설교통국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도에 존치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, 합리화 하게 운영코자 회장의 관직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,

전면적인 지방자치를 맞아 권한의 하향 조정과 행정능률 향상면에서 부합하는 개정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위원 위촉시 도의원이 1명이상 위촉되도록 조치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 (찬성 4, 반대 1, 기권 2)

7. 소수의견 요지

- 당 조례 제2조의 규정중 단서조항에 당해 도의원이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하여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(장준호 의원)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증개정조례안
- 신규조문 대비표